

■■■■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항 관련하여 도급사업에 있어서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조항에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2일에 1회 이상 사업장을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일을 만들어 점검지에 기록 보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접수번호 : 1463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는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내용처럼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직접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안전일지 등에 명확하게 기록 관리할 경우에는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 점검지를 기록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Question** 엘리베이터 내부에 13mm이상 200mm간격으로 철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메탈망을 설치할 경우 메탈망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접수번호 : 3451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안전시설비 등에 보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중

-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 안전대 걸이설비
- 개구부 덮개
- 위험부의 보호덮개
-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웬스, 가설울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e/v 내부에 추락방지용 메탈망을 설치하였다면 현장내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Question 공장 내에서 살짝 다쳤는데, 병원에서 4~5일간 통원 치료를 받고 가라고 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공구를 들고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팔 부위가 아스팔트에 마찰되어 찰과상(흔히 까졌다고 함)을 입었는데, 병원에서는 염증 안생기고 빨리 나오려면, 4~5일간 매일 병원에 와서 10분정도 항생제 주사 맞고, 소독하고, 붕대 교환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4일 이상의 요양으로 생각하고,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접수번호 : 1259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입원, 통원을 불문합니다.

다만, 경미한 재해로써 회사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잠깐 통원치료를 받는 정도의 사고라면 통상 진료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uestion 지붕골 스텔트 해체·제거 작업시 지붕골 스텔트에는 석면이 20%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중 석면은 해체, 제거 등의 작업시 근로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석면폐증, 폐암, 흉막 및 복막의 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석면의 분진이 외부로 비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석면이 비산되는 밀폐된 작업장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 후 근로자는 에어샤워실, 장비실, 목욕실, 갱의실의 단계를 거쳐 오염물질을 제거 합니다. 근로자의 보건을 위해 오염제거구역의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및 증빙처리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접수번호 : 299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하가 질의하신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은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어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취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오염제거구역의 설치비용은 석면 취급에 따른 사용허가 요건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문제와는 별도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